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수원)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원

■공급대상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 20층 52개동, 총 3,603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세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19.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2.07.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19.)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특별공급 신청자로서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특별공급 자격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인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1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까지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1월 24일(수)	1월 29일(월)	1월 30일(화)~1월 31(수)	2월 5일(월)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공고문 9페이지 참조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인계동, 엠에스씨밋)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도시정비과 - 837호(2024. 01. 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 20층 52개동, 총 3,603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2세대 / 다자녀 특별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2024년 2월) / 최초 입주시기 2022년 7월 29일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장애인	다자녀 가구
민영 주택	2024-930002	01	059.8800B	59B	59.8800	22.7200	82.6000	38.5800	121.1800	37.3300	1	1	-
		02	074.6900A	74A	74.6900	26.5400	101.2300	48.1300	149.3600	46.5600	1	-	1
		03	084.9700	84	84.9700	30.8700	115.8400	54.7600	170.6000	52.9700	1	1	-
	합 계										3	2	1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아파트 공급 금액			계약금 (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059.8800B	59B	142동 602호	188,696,000	269,304,000	458,000,000	45,800,000	412,200,000
074.6900A	74A	111동 1101호	236,076,000	336,924,000	573,000,000	57,300,000	515,700,000
084.9700	84	114동 1703호	268,624,000	383,376,000	652,000,000	65,200,000	586,800,000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입니다.

※ 계약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59B	142동 602호	발코니 확장	13,300,000	1,330,000	11,970,000
74A	111동 1101호	발코니 확장	15,000,000	1,500,000	13,500,000
84	114동 1703호	발코니 확장	17,800,000	1,780,000	16,020,000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804-241675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코니 확장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42동 602호 계약자 → '1420602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청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옵션

품목	업체명	모델명	공급금액	비 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RL2640Z(Y)BBEC (콤비냉장고)	700,000	59B타입 142동 602호 74A타입 111동 1101호 84타입 114동 1703호 상기 3세대는 추가 옵션 미선택으로 해당사항 선택 없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엘지전자	K221PR14BL/R (김치냉장고)	1,350,000	
하이라이트 쿡탑	SK매직	GRA-BH301H (하이라이트2구+가스1구)	590,000	
		GRA-BI300H (인덕션2구+가스1구)	820,000	
	아미크론	AMI-B2N1 (올메탈인덕션2구+일반인덕션1구)	1,900,000	
에어드레서	삼성전자	DF60R8300WL(R)	1,290,000	

※ 빌트인 콤비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에어드레서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선반이 설치됩니다.

※ 시공이 완료되어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3. 12. 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자로서 공통자격요건 및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자로서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장애인 기관추천) 다자녀	2024.01.24(수)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차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 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차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차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각 유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IV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p>- 일반(장애인 기관추천)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01.29.(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02.05.(월) (10:00~16:00)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인계동, 엠에스씨맛)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쏘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1.29(월) ~ 2024.02.07(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1.2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분양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일	2024.01.30.(화)~01.31(수)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인계동, 엠에스씨MIT),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유의사항	모든 증명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 분양사무실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주민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세대원이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주민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입증서류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취업비자 /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지속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추천 명부로 접수함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본인발급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계약체결장소 비치)
		○	위임장	-	
		○	대리인 신분증	-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본인 계약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발급용으로 발급 /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계약체결장소 비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일정 및 추첨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

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V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감리	정보통신공사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나로이앤씨	신화FEI	유원이앤에프
감리금액	8,721,827,000	1,039,804,545	1,500,000,000	620,000,000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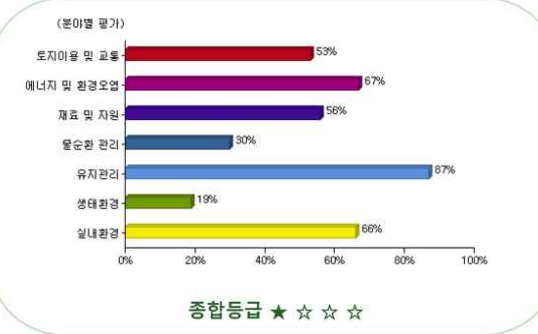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애교역푸르지오 SK VIEW 건축주 :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2.07.28.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애교동 209-14 일원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533,066.6300㎡ (평가연면적: 527,636,7200㎡) 건축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공사공자 : (주)대우건설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공사감리자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인증번호 : G-SEED-C-2022-0451-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07.22. ~ 2027.07.21.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에너지 및 환경오염 67%
 토기이용 및 교통 53%
 재료 및 자원 56%
 물순환 관리 30%
 유지관리 87%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66%

종합등급 ★☆☆☆

2022년 07월 22일



한국부동산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2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배교역푸르지오SKVIEW 준공연도 : 2022072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애교동 209-14 일원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533066.63(㎡)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주)대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공사감리자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인증번호 : 22-주-본-11-0092 평가자 : 박한길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32-08-21 까지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율 건축실적	0	1+	CO ₂ 배출 계수	19.8
에너지효율등급	72.5	1+	CO ₂ 배출 점수	48
에너지대소비율 건축실적	90.6	1	CO ₂ 배출 점수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난방	30.0	38.7	6.6
급탕	30.7	36.7	6.1
조명	11.8	11.5	6.4
환기	3.7	10.2	1.7
합계	72.5	90.6	19.8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한국부동산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비사업
- 신청자 :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비사업조합
-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애교동 209-14 일원
- 성능등급 : 1+등급


가. 소용량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리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효율저용량 차단장비	★★★★	20. 건축외 녹지율 조성	-
2. 고효율저용량 차단장비	★★★★	21. 자연지반 녹지율	*
3. 폐타 건 외벽외의 차열성능	★★	22. 생활환경	*
4. 고효율(도열, 절도)에 대한 실내·외 수급도	★	23. 비오물 조성	-
5. 최정밀 설계수준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차등온도조절장치 설치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시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변성	★★	2. 단열·고효율 급탕설비	★★★★
3. 유해물위험 최소화	*	3. 자연기후자랑 및 자연기후로의 적합성	*
4. 유해물위험 최소화	*	4. 생활환경의 질 향상	★★★★

다. 환경 관리 등급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내재의 생태학적 가치	★★★★	1. 감시 및 정보설비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2. 자연연계	*
3. 특종사질정토양 최소화	★★	3. 화재예방	*
4. 일조권 감소방지 대책의 적용	-	4. 화재예방	*
5. 에너지 성능	★★★★	5. 화재예방	*
6. 에너지 소비량 및 관리비용 절감	-	6. 화재예방	*
7. 산·재생에너지 이용	-	7. 화재예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8. 화재예방	*
9. 안전성 보증을 위한 특장설비의 사용 금지	*	9. 화재예방	*
10. 환경친화적 제품(EPOI)의 사용	★★	10. 화재예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1. 화재예방	*
1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화재예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3. 화재예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4. 화재예방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률 금지	★★★★	15. 화재예방	*
16. 방음관리	-	16. 화재예방	*
17. 방음 및 유출저감수 이용	-	17. 화재예방	*
18. 흡수형 기기 사용	★★★★	18. 화재예방	*
19. 흡수형 모니터형	*	19. 화재예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9월 3일



한국감정원장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기차재	적용	• 펌프류, 모터, 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차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단위세대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인계동, 엠에스씨맛)	135871-007538
시공사	(주)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110111-2137895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	110111-0038805

■ 기타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115-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 수정되었습니다.
- 주차장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법규기준이 6m 이상이며, 우리 사업의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7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의 법규 기준은 우리 사업의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2.3m이며, 우리사업은 해당 법규기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운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2개의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비품 및 운영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환풍,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환풍,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센터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69g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공사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다릅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세대 내 가구(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파우더장, 주방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변경리스트

NO	변동사항	계약	
		변경 전	변경 후
1	부부욕실 수납장 개선	개폐형	슬라이딩형(내부칸막이 변경)
2	욕조 교체	건본주택 사양	공간 확대 모델 설치
3	세면기 교체	건본주택 사양	디자인 개선모델 설치
4	59타입 주방 마감재 변경	건본주택 사양	마감재질 지정 변경
5	84,99,110타입 주방 발코니 도어 측 벽면 마감재 변경	우드시티 마감	(조합세대)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일반세대)타일 또는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6	센서식 싱크절수기	조합세대	일반분양 세대 추가 설치
7	욕실 청소솔	건본주택 미설치	신규설치
8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일반 싱크보울 배수구	음식물 탈수기 설치
9	ONE Pass System 적용(전체세대)	카드키/비밀번호 시스템	ONE Pass System 설치
10	세대내 벽체 단열 상향 변경	비드법 보온판 1종 2호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11	주방 수납공간 개선 / 임대제외	코너장 내부 고정선반	코너장 인출선반(1개소)
12	아일랜드식탁 수납장 앞뒤 양면 오픈형 변경	거실방향 고정판 마감	거실방향 도어 설치 [74A, 84, 99]84분리형 옵션세대는 제외
13	디지털 도어록 상향 변경	건본주택 사양(아시아블로이코리아 (주)아이레보)	지문식 기능 추가(좌동, X500-FH)
14	콘센트 배치(발코니, 110현관 참고)	건본주택 기준	전TYPE : 안방발코니 / 110TYPE : 콘센트 추가 설치
15	정보통신 등급 변경	1등급	특등급(인증제외)
16	전기차 충전 고속1기 추가, 완속1기 삭제	급속5대, 완속 21대	급속6대, 완속 2대
17	택배차량 회차 동선(가드빔, 배관)		택배차량 회차동선위한 가드빔, 배관 시공
18	외부 창호 착색	백색 프레임	외부창호 착색
19	안방 분합유리 규격	5T에칭+22T로이복층	16T복층(투명)+16T복층(투명)
20	실외기도어(74A, 110)	철재창호	플라스틱 창호
21	스크린골프 룸 개소	4개룸 설치 / Golf zone	8개룸 설치 / Golf zone
22	연습타석(GDR 설치)	일반 22타석	13타석 설치 / 골프존 GDR
23	스크린 골프 옵션(VISION PLUS)		옵션, GVS(센서), 3중메트/좌타석(1개소)
24	연습타석 옵션(GDR)		옵션, 키오스크/좌타석(2개)
25	커뮤니티 레이아웃 변경	사업승인도서 기준	벽체 변경 및 신설
26	커뮤니티 냉난방 개선	사업승인도서 기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27	커뮤니티 설비/전기	사업승인도서 기준	자동식 소화기 / 덕트 / 소화, 위생배관 변경
28	돌봄센터신설	사업승인도서 기준	바닥전기식 난방, 환기장치, 스파이럴덕트 추가
29	커뮤니티 디자인 특화		독서실&전실 / 피트니스 / 돌봄센터
30	커뮤니티 디자인 특화		체육관 / 흡음판넬, 코리아팀버: 북미경질 단풍나무
31	커뮤니티 / 근생 단열개선 (외부 고정창 유리사양 변경, 도어제외)	고정창 : 일반 AL창호	고정창 : 단열 AL 창호
32	커뮤니티 / 근생 단열개선 (외부 고정창 유리사양 변경, 도어제외)	고정창 : 강화 유리 8T	고정창: 24T 로이복층/아르곤가스
33	주차장 출입관리 시스템	번호인식 시스템	무인유료정산 시스템
34	근생#1 특화마감	사업승인도서 기준	홀 / 복도 / 화장실 마감재 특화
35	근생#1,2,3 특화마감	사업승인도서 기준	조명 특화
36	근생#2,3 특화마감	사업승인도서 기준	전실 / 화장실 특화
37	근생#1 설비개선	사업승인도서 기준	화장실 시스템냉난방기 추가
38	근생#2,3 설비개선	사업승인도서 기준	화장실 시스템냉난방기 추가
39	근생#1 ELE/V 규격 변경	15인승	24인승
40	148동 공용부 설계개선	복도 천정 미설치	148동 천정설치, 몰딩, 커텐박스
41	148동 공용부 설계개선	복도 창호 미설치	AL창호 설치, 일반바, 5T 유리
42	148동 공용부 설계개선	사업승인도서 기준	148동 설비 소방공사
43	148동 공용부 설계개선	사업승인도서 기준	148동 전기 소방공사
44	지하주차장 무근 콘크리트 강도 상향	18Mpa	21Mpa
45	B1F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 부속실 제외	B1F 주차장바닥 에폭시코팅	B1F 주차장바닥 폴리우레아
46	방근시트	사업승인도서 기준	주차장 상부 조정식재 구간 방근시공
47	설계 용역		조감도 CG작성 및 특화설계 / 색채변경 용역비
48	비구조 반영	필로티 내부 조적벽체	필로티 내부 골조벽체
49	비구조 반영	자동문 주변 조적벽체	자동문 주변 골조벽체
50	세대 벽체	59형 침실1, 주방사이 180T 경량벽체	59형 침실1, 주방사이 벽체 : 0.5B조적+50T 단열재 +9.5T 석고보드
51	램프바닥 마감	램프 바닥 조면처리	칼라무니 콘트리트
52	장애인 협회 조치사항	ELEV 점자타일 버튼 전면 1개소	ELEV 점자타일 버튼 전면 2개소
53	39TYPE세대 벽체	39TYPE 실외기실 골조 벽체 0.5B	39TYPE 실외기실 골조 벽체 100mm골조
54	39TYPE세대 벽체	39TYPE 0.5B 조적벽	39TYPE 통합 PD경량벽체(2시간 내화 구조)
55	PIT 신설		139, 116동 부대복리시설 PIT신설
56	부지인수지연(동부교회)		부지인수 지연으로 돌관 공사비 골조 / 장비 / 간접경비
57	시스템창호	시스템창호(현대엘앤씨)	시스템창호(현대엘앤씨) 거실1, 침실1, 침실2, 침실3(99타입 이상)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2.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인계동, 엠에스씨미),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주)대우건설 A/S센터 : 031)231-8812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A/S센터 : 031)898-8782

■ 분양 문의 : 031-267-0887